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 사업장 대응 지침

---

2020. 1. 29.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목 차



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1
1. 법적 근거 .....	1
2. 임상적 특성 .....	1
3. 진단 .....	1
4. 치료 .....	1
5. 예방 .....	2
II. 대응 방안 .....	3
1. 목적 .....	3
2. 기본방향 .....	3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4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4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5
다.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6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	7
마.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8

## <참고·붙임 목록>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	9
부록1) 생활수칙 안내문(노동감시) .....	13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14
부록3)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15
붙임1) 감염병 예방 수칙 .....	16
붙임2) 카드 뉴스 .....	19
붙임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 .....	23
붙임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Q & A .....	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1 법적 근거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때 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2 임상적 특성

- 주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잠복기: 현재 정확한 잠복기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을 준용하여 최대 잠복기 14일로 적용하여 관리
- 치명률: 약 4%

## 3 진단

-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

## 4 치료

-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으나, 환자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공격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항바이러스제,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 실시

## 5 예방

- 현재 예방 백신 없음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붙임2 참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 세정제를 사용
  -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옷소매로 가리거나 휴지 사용시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중국지역 출장(체류)시 예방 수칙 준수
  - 출장 중 농장 및 동물(가금류)과 접촉하지 않기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하지 않기
  - 기침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1 목 적

- 본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 2 기본 방향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화장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화장지를 바로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한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티슈 또는 옷소매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N95, KF94에 준하는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 핸드 타월, 티슈,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샤워실·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소독제는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소독제(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알콜 성분 소독제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과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라야 함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휴게실·대기실 등에 비치된 잡지·신문 제거, 주기적인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세척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건강을 보호를 한다.

○ 해외출장 등을 실시하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 노동자로 하여금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 여행 건강(Travel Health)**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였습니까? 열, 심한 기침, 호흡곤란, 혹은 몸이 아픈 증상이 있습니까?

☞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증상과 해외에 체류했었는지 질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티슈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 해외 출장 후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 감시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특히,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청소, 세탁, 간병인,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는 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지도 한다.

**다.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회사 내에 있는 노동자가 해외 출장 또는 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토록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이때 해당 노동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내에서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 만일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였다면 관할 보건소에 바로 연락하여야 한다. 접촉한 사람 또한 자가 격리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유행 확산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한다.
  - 동 계획 수립시 사내에 같이 근무하는 하청·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 격리노동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휴직을 부여한다.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 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마.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 되는 시점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
    -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등
  - 검진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 '20.1.28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1. 환자 및 의사환자 관리

### ① 확진환자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조치사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입원 치료

### ② 의사환자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우한[Wuhan, 武漢], 스옌[Shiyan, 十堰], 상양 [Xiangyang, 襄陽], 징먼 [Jingmen, 荊門], 샹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黃岡], 어저우 [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黃石], 셴닝[Xianning, 咸寧], 징저우 [Jingzhou, 荊州], 이창[Yichang, 宜昌], 쉰이저우[Suizhou, 隨州], 선농자임 [Shennongjia, 神農架林], 텐먼[Tianmen, 天門], 첸장[Qianjiang, 潛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묘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발열: 37.5 ℃ 이상

-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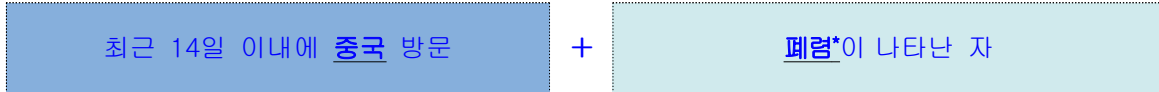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치사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검사, 입원 치료

### ③ 조사대상 유증상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검사, 입원 치료

### ④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니지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중국(후베이성 제외) 방문 후 14일 이내 폐렴이 아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최종 노출일(중국방문)로 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생활수칙안내문(부록1)」에 따라 능동감시하며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3)」을 준수

## 2. 접촉자 관리

### ①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

- ◆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접촉자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에서 확진 환자 접촉자 조사
-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교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동거인

- (밀접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능동감시 조치는 일상접촉자와 동일하게 수행
  -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또는 시설·병원격리)를 원칙, 보건소장은 밀접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 발부
- (일상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능동감시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능동감시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1’ 참조)

## ② 의사환자와의 접촉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와의 접촉자 조사
-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 3. 격리해제 조치

### ① 격리해제 기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회복 후 검체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② 격리해제 확인

-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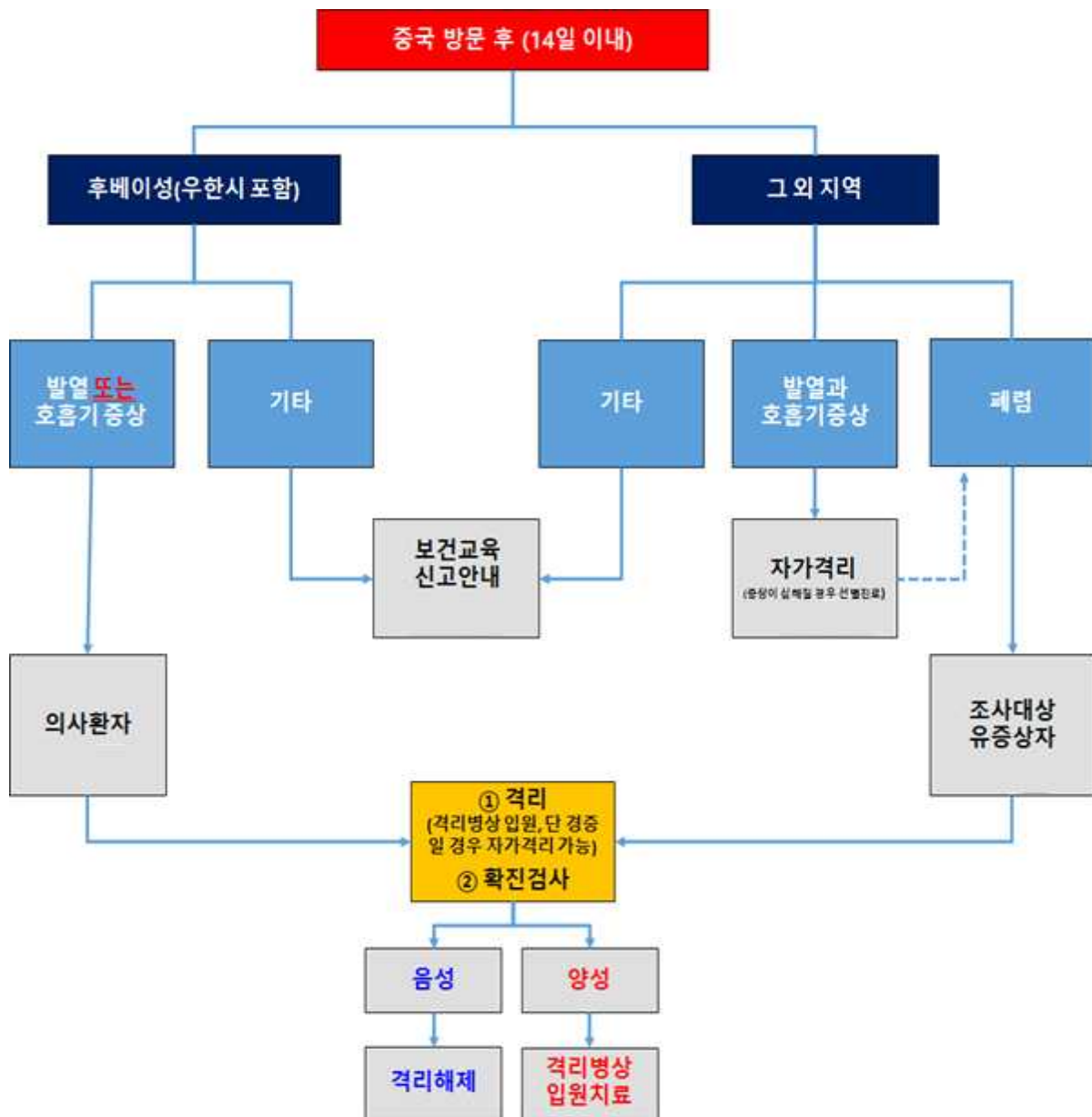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 ③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의 일상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
-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지속 후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4. 대응 절차





-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능동감시'가 필요한 분에게** 제공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상황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중국 최종 체류일로부터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 평상시와 같이 외출, 출근, 등교 등 일상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자가모니터링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C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위의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C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발열(37.5 °C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 1. 유의사항

### □ 생활속 예방수칙

- ▶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기 말기
- ▶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 의료기관 이용시 준수사항

- ▶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
- ▶ 중증 환자 외에 대형의료기관 이용을 자제
- ▶ 비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실 내원을 자제
- ▶ 의료기관 내원시, 의료진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안내에 잘 따를것

### □ 병문안 등 의료기관 방문시 준수사항

- ▶ 되도록 병문안 자제,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병문안을 삼가도록
- ▶ 병문안할 때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위생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
- ▶ 병문안 후, 보건요원 등의 문의와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정직하게 응하기

## 2.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손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 자주 씻어요. ☞ 올바르게 씻어요. ☞ 깨끗하게 씻어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끝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3. 기침시 주의사항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휴지가 없으면  
옷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기침을 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로 손씻기가 어려우 경우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2020.01.21



#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발열과 기침이 나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2020.01.21



해외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이지났는데..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무슨 병인지 몰라서 두려워요.. ㅜ ㅜ



2/8



2020.01.21

해외여행 후 발열과 기침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그럴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하세요.

질병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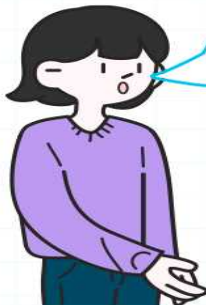
모든 감염병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3/8

2020.01.21

**주요 감염병 상담부터  
질병관리본부 업무 민원 상담까지!**

감염병 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은데  
다 질문해도 되나요?



**Q 어떤 것을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감염병(메르스 등)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담·조치사항 안내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 법정 감염병 정보 및 예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된 민원 상담 및 담당자 연결

4/8



2020.01.21



**365일 24시간 국내-해외**  
모두 상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중국에서 감기 걸렸는데 혹시  
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까요?



**Q) 업무시간은요...? 외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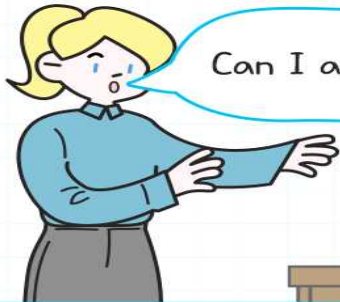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경우  
상담 가능한 번호 알려주시면 추후 연락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82-2-2663-1339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8

2020.01.21



If you are a foreigner even, don't worry.  
**Please call at 1339 Call center!**



Can I ask you something?



**Q) 외국인도 이용 가능할까요?**

1339 콜센터와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3자 통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1345 상담 가능 시간(20개국어)  
09:00~22:00 한국어 중국어 영어 | 09:00~18:00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외 17개 언어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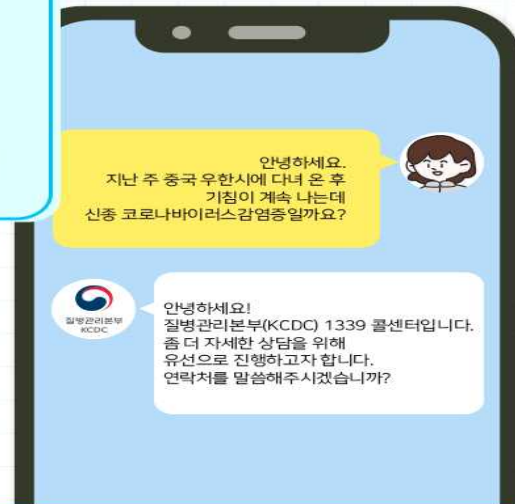
2020.01.21



## 전화가 어렵다면, 카톡으로 상담받으세요!

카카오톡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 추가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질병·건강정보도 받고  
언제 어디서나 1:1 상담 가능!



7/8

2020.01.21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는  
설 연휴에도 감염병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8/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 중국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  
접촉 금지



· 기침 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유행지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

\*중국 유행지역 정보 확인: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2020. 1. 23

##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Q&A

### <여행 관련>

Q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 대한민국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여 중국 후베이성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지역\* 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 홍콩·마카오 포함, 대만 제외

-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 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2. 중국 여행 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 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3.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폐렴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검사 관련>

### Q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는지요?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Q7. 이번에 양성 판정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 질병관리본부가 기 구축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에서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공개한 신종(우한) 바이러스(6종)와 100%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Q8. 향후 검사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향후 조속히 민간 의료기관(검사기관 포함)에서도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Q9.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원 및 전파 관련>

**Q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사람간 전염이 되나요?**

- 현재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Q11.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람 간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은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12.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3.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4. 화난 해산물 시장 외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 초기와는 달리 현재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력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어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역 관련>

Q15. 중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대상에 해당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Q16.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중국 제3지역 또는 항만에서의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전국 검역소 입국장에서는 입국하는 모든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잠복기로 인한 검역의 한계를 인지하고, 입국검역과 지역사회와의 감염병관리 연계\*를 추진 중입니다.

\*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의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14일 동안 일선 의료기관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한 의심환자 구분 가능

Q16. 중국은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가?

- 중국 전체로 오염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검역관리 수행 중입니다.(20.1.28.)

## <접촉자 관련>

### Q17.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 Q18.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Q19. 환자가 확진되면 항공기 내 같이 탄 접촉자(승객)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접촉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환자가 확진되면 동승항공기의 근접접촉자 및 공항 내 접촉자는 좌석번호 및 공항 CCTV 등을 확인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자를 분류, 확인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DUR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명단이 공유되며, 거주지 소재 시·도로 통보하여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접촉자로 확인되면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락드려 증상 여부 확인 등 조치하게 됩니다.

## <감염병 문의 관련>

### Q20.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Q21.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 <치료>

### Q22.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Q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애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기타>

### Q24.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 Q25.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DUR/ITS(심평원)를 통해 의료기관에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Q26.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27. 중국 의료진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 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28.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게 된 근거와 내용은?**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기평가회의를 통하여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지속하되,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방역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29.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